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2006. 2.  
행정위원회

### 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2월 13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20일

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### 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최병찬)

가. 개정이유

- 약사법에서 관리되고 있던 의료기기판매업 사무에 대하여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추어 동법에 의거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료기기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, 신고사항 변경신고, 폐업 등 제신고 사항,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임 (안 별표 제8호)

다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의료기기법
- 예산조치 : 비예산사업
- 입법예고(2006. 1. 19 ~ 2006. 2. 8) 결과 : 의견 없음

### 3.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용어와 근거법령 및 위임사무의 내용을 개정함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,
- 사무위임 또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審 査 結 果 : 原 案 可 決